

『멕시코, 생태계 균형 및 환경 보호법-탄소발자국 관련 개정안 제안』

2025. 03. 19.

| | | | |
|----------|-----------------|-----------------|----------------------|
| TBT 통보여부 | 미통보 | HS Code | 전 제품 |
| 통보국 | 멕시코 | 전년도 수출액 (천불) | 12,059,020 (2025) |
| 작성기관 |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 문의처 | tbt@kotica.or.kr |

규제 요약서

□ 규제 개요

- (규제요지) 멕시코 연방 하원은 「생태균형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법(LGEEPA)」에 제37조의3을 신설하여 소비제품의 탄소발자국 정보를 제품에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 (적용범위) 경제부가 지정하는 소비제품

□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경제부가 지정하는 소비제품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방법론에 따라 산정된 탄소발자국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제안하였으며, 해당 제도는 초기 자발적 방식으로 운영되다가 환경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의무화될 수 있음

□ 주요국 규제동향 비교

- 규제 동향
 - (EU) 제품 환경발자국(PEF) 방법론을 기반으로 제품 전과정 환경영향을 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배터리 규정 등을 통해 특정 제품에 대한 탄소발자국 선언 및 환경정보 표시 의무를 도입하고 있음
 - (미국) 연방 차원의 제품 탄소발자국 표시 의무 규제는 도입되지 않았으며, FTC Green Guides를 통해 환경 마케팅 주장에 대한 사실성 및 근거 입증을 요구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음

- (일본) ISO 14067 기반의 제품 탄소발자국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기업의 자율적 탄소발자국 산정 및 정보 제공을 지원하고 있음

□ 기술규제 영향분석

- (규제 영향 분석 결과) 소비제품의 탄소발자국 정보 표시 제도 도입이 추진됨에 따라 향후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 산정 및 환경정보 관리 요구가 확대되어 소비재 수출기업의 대응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권고사항) 수출기업은 멕시코의 후속 시행 규정에서 적용 대상 제품군 및 표시 기준이 구체화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 산정 및 관련 데이터 관리 체계를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예상되는 기업애로 요인 분석 및 파급효과

- 제품 전과정 탄소배출량 산정 및 환경정보 관리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데이터 관리 및 대응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제품 설계 및 공급망 관리 과정에서 탄소배출량 관리 요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대응 방안

- 수출기업은 향후 탄소발자국 표시 요구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 산정 및 관련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공급망 전반의 탄소배출 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목 차

| | |
|------------------------------|----|
| 요약문 | 1 |
| I. 규제 개요 | 2 |
| II. 규제 세부 내용 | 3 |
| III. 관련 인증 정보 | 5 |
| IV. 주요국 규제동향 및 규제수준 비교 | 6 |
| 1. 주요국 기술규제 동향 | 6 |
| 2. 주요국 규제 수준 비교 | 8 |
| V. 예상 애로사항 및 파급효과 | 9 |
| 1. 기술규제 영향 평가 검토 | 10 |
| 2. TBT 협정문 위배 여부 판단 | 11 |
| VI. 대응 방안 | 12 |
| 참고 1 규정(전문) 원문 번역본 | 13 |

요 약 문

| | | | | |
|---------------------|-----------------------|--|----------------------|--|
| 규 제 명 | 영문 | Ecological Equilibrium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1988 - Proposed Amendment - (on carbon footprint of products) Draft Decree, February 2026 | | |
| | 국문 | 생태계 균형 및 환경 보호법, 1988 - 개정안 제안 - (제품의 탄소 발자국 관련) 2026년 2월 법령 초안 | | |
| WTO/TBT 통보문 번호 | 미통보 | 통보국 | 멕시코 | |
| 채택(예정)일 | 미정 | 시행현황 | 개정 초안 | |
| 시행(예정)일 | 관보 게재 다음 날 | 통보일(고시일) | 미정 | |
| HS Code | 전 제품 | 의견수렴 마감일 | - | |
| 총 수출액 (천불) | 709,033,000 (2025) | 對발행국 수출액 (천불) | 12,059,020 (2025) | |
| 중소기업 주력 수출 품목 여부 | 대상 | | | |
| 규제 주요 내용 | 해당 부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멕시코 경제부, 환경천연자원부, 연방소비자보호청 | | |
| | 규제 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제품의 탄소발자국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환경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관행을 촉진하기 위함 | | |
| | 주요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부 등 관계 기관이 지정하는 소비제품에 대해 탄소발자국 정보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탄소배출 라벨링 제도를 자발적 방식으로 도입한 후 점차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수 있도록 규정함 | | |
| 심층분석 결과 (종합 의견)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제품의 탄소발자국 정보 표시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됨에 따라, 향후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 산정 및 환경정보 관리 요구가 확대되어 소비재 수출기업의 대응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
| 대응 여부 | 예상 기업 애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재 제품에 대한 탄소발자국 정보 표시 요구로 인해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 산정과 전과정 데이터 수집·관리 및 표시 정보 검증 부담이 기업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 |
| | 대응 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기업은 후속 규정에서 적용 대상 및 표시 기준 구체화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 산정 및 공급망 기반 데이터 관리 체계를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음 | | |

1

규제 개요

□ 도입배경

- 멕시코 연방 하원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생산 및 소비 촉진을 위해 소비제품의 탄소발자국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생태균형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법(Ley General del Equilibrio Ecológico y la Protección al Ambiente, LGEEPA)」 제4장 제6절에 제37조의3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라틴 아메리카 일부 국가에서는 제품의 탄소배출 정보 제공 또는 탄소발자국 표시와 관련된 제도 및 정책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반면, 멕시코에서는 소비제품의 탄소배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규제 요지

- 동 개정안은 「생태균형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법」에 제37조의3을 신설하여 소비제품의 탄소발자국 정보 표시 제도를 점진적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탄소발자국 정보 표시) 경제부가 지정하는 소비제품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방법론에 따라 산정된 탄소발자국 표시 제도를 도입함
- (단계적 의무화) 탄소 배출량 표시제의 시행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자발적 시범 방식으로 시작하여 이후 환경적 영향에 비추어 법령이 정하는 우선 부문에서 의무적인 제도로 전환됨

□ 적용대상

- 경제부가 지정하는 소비제품이며, 향후 공개 예정

□ 시행일

- 관보 게재 다음 날

2

규제 세부 내용

□ 개요

- 멕시코는 「생태균형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법(LGEEPA)」 개정을 통해 소비제품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방법에 따라 산정된 탄소발자국 정보를 명확하고 객관적이며 검증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자발적 방식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적용제품

- 경제부가 지정하는 소비제품이며, 향후 공개 예정

□ 주요내용

| 현행 조문 | 개정 제안 조문 |
|-------|---|
| (신설) | <p>제4장 제6절 제37조의3.</p> <p>경제부가 환경천연자원부 및 연방소비자보호청과 협력하여 지정하는 소비자 제품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방법론에 따라 계산된 탄소발자국에 관한 명확하고 객관적이며 검증 가능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p> <p>탄소 배출량 표시의 시행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며, 자발적 제도로 시작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시행 규정에서 정한 부문에서는 의무적인 제도로 전환된다.</p> <p>제공되는 환경정보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오해나 혼란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p> |

경과규정

제1조. 본 법령은 연방 관보에 공포된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연방 행정부는 탄소 배출량 라벨링 시행에 필요한 규제 조항을 발행하기 위해 **180일의** 기간을 갖는다.

제3조. 경제부는 환경자원부와 협력하여 라벨링 의무 적용을 위한 우선순위 부문 및 제품을 설정한다.

□ 세부내용

- (탄소발자국 정보 표시) 경제부가 환경천연자원부 및 연방소비자보호청과 협력하여 지정하는 소비제품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방법론에 따라 산정된 탄소발자국 정보를 명확하고 객관적이며 검증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함
- (표시 정보 요건) 제공되는 환경정보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표시되어야 하며 오해나 혼동을 유발하지 않도록 규정함
- (단계적 의무화) 탄소배출량 표시 제도는 자발적 방식으로 시작하여 환경적 영향 등을 고려해 시행 규정에서 정한 우선 적용 부문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무화될 수 있음
- (시행 및 후속조치) 본 법은 공포 다음 날부터 시행되며 행정부는 180일 이내 세부 시행 규정을 마련하고 경제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의무 적용 대상 제품 및 우선 적용 부문을 설정함

* 본 규제는 제품에 대한 별도의 인증 취득을 요구하는 제도가 아니라, 탄소발자국 정보를 산정·표시하도록 하는 정보 제공 중심의 규제로서 인증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또한 제도가 자발적 도입 후 단계적 의무화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인증·검증 체계는 향후 시행 규정에서 마련될 예정이므로 현 시점에서 인증 관련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인증 절차

- 해당사항 없음

사후관리

- 해당사항 없음

표시사항

- 해당사항 없음

신청 시 유의사항

- (인증 유효기간) 해당사항 없음
- (인증비용) 해당사항 없음
- (서류 보존기간) 해당사항 없음
- (변경사항 발생 시) 해당사항 없음
- (위반 시 제재) 해당사항 없음

적합성평가 기관

- 해당사항 없음

4

주요국 규제동향 및 규제수준 비교

1. 주요국 기술규제 동향

1

EU

- (현행 규정) EU는 2021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권고(Commission Recommendation) (EU) 2021/2279」를 통해 제품환경발자국(Product Environmental Footprint, PEF) 및 조직환경발자국(Organisation Environmental Footprint, OEF) 방법론을 제시하여 제품의 전과정 환경영향(탄소발자국 포함)을 정량적으로 산정·검증하는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기업의 환경정보 표시 및 정책 평가에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도입동향) EU는 2024년 「Directive (EU) 2024/825」를 제정하여 근거 없는 일반적 환경 주장(예: ‘environmentally friendly’, ‘climate neutral’) 및 공신력 없는 자체 환경라벨 사용을 금지하고 환경 주장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요구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2026년 9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2

미국

- (현행 규정) 미국은 연방거래위원회(FTC)의 「Green Guides(16 CFR Part 260)」를 통해 환경 마케팅 주장에 대한 해석 기준과 입증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나, 소비제품에 대한 탄소발자국 표시는 의무화하지 않음
- (도입동향)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09년 온실가스가 공중보건 및 복지에 위협을 초래한다는 ‘Endangerment Finding’을 근거로 「Clean Air Act」에 따른 온실가스 규제를 추진해 왔으나, 2026년 2월 해당 판단을 철회하는 최종 규칙이 발표되면서 규제 정책 방향에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현행 규정) 일본은 경제산업성(METI)과 환경성(MOE)이 2023년 3월 「카본풋프린트 가이드라인(カーボンフットプリント 実践ガイド)」을 공동 발표하여 ISO 14067 기반의 제품 탄소발자국 산정 및 검증 방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고, 이어 2025년 2월 「카본풋프린트 표시 가이드(カーボンフットプリント表示ガイド)」를 발표하여 기업이 제품·서비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소비자에게 적절히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지침을 추가하였으나, 두 문서 모두 의무규정이 아닌 자율적 가이드라인임
- (도입동향) 일본은 제품 탄소발자국 표시와 관련하여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제도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법적 규정은 도입되지 않은 상태임

2. 주요국 규제 수준 비교

| 구분 | 멕시코 | EU | 미국 | 일본 |
|--------------|--|--|---|--|
| 상위 법·프레임(전반) | 「생태균형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법(Ley General del Equilibrio Ecológico y la Protección al Ambiente)」 개정안(제37조의3 신설) | Directive (EU) 2024/825, Regulation (EU) 2023/154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권고 (Commission Recommendation) (EU) 2021/2279 | 그린가이드 (FTC Green Guides, 16 CFR Part 260) | 카본풋프린트 가이드라인 (カーボンフットプリント ガイドライン), 카본풋프린트 표시 가이드 (カーボンフットプリント 表示ガイド) |
| 주요 규제부처 | 환경천연자원부(SEMARNAT), 경제부(SE), 연방소비자보호청(PROFECO)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회원국 감독당국 | 연방거래위원회(FTC) | 환경성(MOE), 경제산업성(METI) |
| 적용 제품 범위 | 경제부가 지정하는 소비제품 전반 (특정 산업·제품은 향후 지정) | 환경 주장 규제는 소비자시장 전반, 탄소발자국 의무는 특정 제품군 위주 | 소비제품 전반 환경 마케팅 주장 규제 | 제품·서비스 전반의 자율적 탄소발자국 산정·표시 가이드 |
| 탄소발자국 산정 기준 | 국제적으로 인정된 방법론 적용 | PEF(Product Environmental Footprint) 등 EU 공통 환경발자국 방법론 및 제품별 산정 체계 | 별도 산정 기준 없음 | ISO 14067 기반 CFP 산정 가이드 |
| 표시 의무 여부 | 자발적 도입 후 단계적 의무화 가능 | 일부 제품군은 의무화, 일반 제품은 의무 표시 없음 | 의무 표시 제도 없음 | 의무 표시 없음(기업 자율) |
| 환경 주장 규제 | 명확·객관·검증 가능 정보 및 소비자 오인 방지 요구 | 근거 없는 환경 주장 및 자체 환경라벨 금지 | 환경 마케팅 주장 입증 요구 | 오인 방지 및 정확한 정보 제공 원칙 제시 |
| 적합성 평가/검증 | 객관적 검증 가능 정보 요구 (세부 규정 향후 마련) | 환경 주장 검증 요구 | 합리적 근거 요구 | 제3자 검증 의무 없음 (검증은 선택 가능) |
| 표시·정보제공 방식 | 탄소발자국 정보 제공 (구체적 방식 향후 규정) | 탄소발자국 선언 및 환경정보 표시 | 환경 주장 표현 관리 | 제품·포장·광고·웹사이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CFP 표시 가이드 |
| 사후관리(감시) | 시행 규정에서 구체화 예정 | 회원국 시장감시 체계 | FTC 소비자 보호 집행 | 법정 사후관리 체계 없음 (자율 가이드 중심) |

1. 기술규제 영향 평가 검토

○ 규제 개요

| 항목 | 내용 |
|------|--|
| 규제명 | Ecological Equilibrium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1988 - Proposed Amendment - (on carbon footprint of products) Draft Decree, February 2026 |
| 규제기관 | 멕시코 하원 (Mexican Chamber of Deputies) |
| 법적근거 | Ley General del Equilibrio Ecológico y la Protección al Ambiente |
| 통보문서 | 미통보 |
| 주요목적 | 소비제품의 탄소발자국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주요 요구사항

| 요구사항 | 검토결과 |
|-------------|---|
| 탄소발자국 정보 표시 | 경제부가 지정하는 소비제품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방법론에 따라 산정된 탄소발자국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
| 탄소발자국 정보 표시 | 탄소발자국 표시 제도는 자발적 방식으로 시작하여 향후 우선 부문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 가능 |
| 환경정보 제공 기준 | 제공되는 환경 정보는 명확하고 객관적이며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함 |
| 시행 준비 | 법 시행 후 180일 이내 관련 시행 규정 마련 |

○ 평가 항목별 분석

| 평가항목 | 평가결과 |
|----------|---|
| 필요성 |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소비 촉진을 위한 환경정보 제공 제도의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소비제품의 탄소발자국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이 존재 |
| 비차별성 | 특정 국가 또는 기업을 차별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지정된 소비제품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구조 |
| 최소무역 제한성 | 제도가 초기에는 자발적 방식으로 운영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구조로 즉각적인 무역 제한 효과는 낮을 것으로 판단됨 |
| 투명성 | 탄소발자국 정보를 국제적으로 인정된 방법론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규제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됨 |

○ 예상되는 기업애로 요인 분석 및 파급효과

| 구분 | 영향 유형 | 구체적 발생 원인 | 영향경로 |
|----------------|-------------------------|--|--|
| 탄소배출 정보 관리 |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 및 데이터 관리 부담 | 소비제품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방법에 따른 탄소발자국 정보 제공이 요구됨에 따라 제품 전과정 배출량 데이터 관리 필요 발생 | 탄소발자국 산정 요구 발생 → 제품 전과정 데이터 수집 필요 → 탄소배출량 산정 수행 → 환경정보 관리 체계 구축 → 기업 관리 부담 증가 |
| 제품 설계 및 공급망 관리 | 탄소배출 관리 요구 확대 | 탄소배출 정보 제공을 위해 공급망 전반의 데이터 확보 및 관리 필요 발생 | 탄소배출 관리 요구 확대 → 공급망 데이터 확보 필요 → 제품 전과정 배출 영향 고려 → 설계·조달 관리 조정 → 운영 부담 증가 |
| 표시 관리 및 규제 대응 | 표시 정보 검증 및 규제 대응 부담 | 탄소발자국 정보의 명확성·객관성 및 소비자 오인 방지 요구에 따라 표시 정보 산정 및 관리 필요 발생 | 탄소정보 표시 요구 발생 → 표시 정보 산정 및 검증 필요 → 소비자 오인 방지 기준 적용 → 표시 자료 관리 강화 → 규제 대응 부담 증가 |

○ 결론 및 권고 사항

- (규제영향) 소비재 제품에 대한 탄소발자국 정보 표시 요구가 도입될 경우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 산정과 관련 데이터 관리 및 표시 검증을 위한 추가적인 관리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권고사항) 수출기업은 멕시코의 후속 규정에서 적용 대상 제품군 및 표시 기준 구체화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 산정 및 관련 데이터 관리 체계를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TBT 협정문 위배 여부 판단

○ TBT 협정문 위배사항 없음

| 연번 | 무역기술장벽 유형 | 위반사항 |
|----|------------------------------|---------|
| 1 | 국제표준과 일치화 되지 않은 표준 | 해당사항 없음 |
| 2 | 자국 제품과 수입제품의 차별적 대우 | 해당사항 없음 |
| 3 | 적합성평가절차의 중복 | 해당사항 없음 |
| 4 | 불필요한 무역방해 초래 | 해당사항 없음 |
| 5 | 적용되는 법률 및 기술규정의 투명성 부재 | 해당사항 없음 |
| 6 | 규제 도입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 7 | 규제 발표와 시행 사이에 적절한 시행 유예기간 부재 | 해당사항 없음 |
| 8 | 외국의 유사인증 불인정 등 | 해당사항 없음 |

6

대응 방안

□ 대응 방안

○ 기업 규모별 전략

| 구분 | 대응 핵심 | 대응 방안 |
|------|--------------|--|
| 중소기업 | 외부 지원 활용 | 자체 탄소배출량 산정 역량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국내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제도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 산정 및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함 |
| 중견기업 | 공급망 관리 체계 구축 | 주요 원료 및 협력업체로부터 탄소배출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고 제품 전과정 배출량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탄소발자국 표시 요구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 대기업 | 선제적 탄소정보 관리 |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 경험과 내부 ESG 관리 체계를 활용하여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을 고도화하고 공급망 기반 데이터 관리 역량 강화가 필요함 |

- 본 보고서는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분석 및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위 규제와 관련된 정보는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knowtbt.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또한, 추가 문의사항 또는 애로사항이 있으실 경우,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의 상담 신청을 통해 접수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경로: Knowtbt.kr 접속 → 상담·정보조사 신청 → 상담 신청)

참고 1

규제원문(전문) 번역본

소비자 제품의 탄소 배출량 표시와 관련하여 생태 균형 및 환경 보호에 관한 일반법에 조항을 추가하는 법령 발의안(하원의원 디아나 에스테파니아 구티에레스 발티에라 및 PAN(국민행동당) 원내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이 공동 발의)

아래에 서명한 제66대 입법부 하원의원이자 국민행동당 원내 교섭단체 소속 의원인 디아나 에스테파니아 구티에레스 발티에라(Diana Estefanía Gutiérrez Valtierra)는 멕시코 합중국 헌법 제71조 제2항, 하원 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 제77조, 제78조 및 기타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하원 본회의 심의를 위해 소비자 제품의 탄소 배출량 표시와 관련하여 생태 균형 및 환경 보호에 관한 일반법에 제37조의3을 추가하는 법령 발의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한다.

입법 이유서

멕시코 합중국 헌법은 모든 사람이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가 환경 악화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생산 및 소비 모델을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헌법상의 명령에 따라 생태 균형 및 환경 보호에 관한 일반법은 그 목적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환경정책의 원칙 및 수단을 정의하는 데 있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법적 체계 내에서 환경 정보 제도는 공공 및 민간의 의사결정을 보다 지속 가능한 관행으로 유도하기 위한 핵심 메커니즘이다. 환경 정보의 투명성은 소비자, 기업 및 관할당국이 환경 영향을 식별하고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한다.

기후 변화는 21세기의 주요한 글로벌 과제 중 하나이다. 과학적 증거에 따르면 생산 및 소비 패턴이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공공정책은 생산 부문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탄소 배출량 표시(라벨링)는 보다 책임 있는 소비 결정을 촉진하고, 기술 혁신을 장려하며, 환경 기준이 점점 더 엄격해지는 시장에서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확립되었다.

유럽연합은 소비자를 위한 환경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선진적인 규제 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제품 환경발자국(PEF) 방법을 통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탄소발자국을 비롯하여 제품의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환경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조화된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검증 가능하고 비교 가능하며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환경 관련 주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왔으며, 그린워싱(greenwashing)으로 알려진 기만적 광고 관행에 맞서고 있다.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은 식품, 섬유 등 특정 부문에서 의무적인 환경 표시 제도로까지 나아가 이러한 조치의 실행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여러 국가들이 특히 전략적 부문과 수출 제품을 대상으로 의무적 또는 자발적인 방식으로 환경 표시 및 탄소발자국 측정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칠레는 국가 탄소발자국 정책과 환경 정보 제공 의무 및 "칠레 탄소발자국 인증 마크"와 같은 공식 인증 프로그램을 통합한 생산자책임확대제도법을 갖추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환경 표시 및 인증 제도를 포함하는 탄소중립 국가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콜롬비아는 국가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으며, 식품 및 섬유와 같은 부문에서 환경 표시를 위한 기술규정을 발전시켜 왔다.

브라질은 산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국가 환경 인증 시스템과 배출량 보고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탄소발자국 측정을 위한 기술규정을 채택했으며, 특히 농산업 제품에 대한 환경 표시 프로젝트를 개발했다.

이러한 경험들은 탄소 배출량 표시가 이 지역과 무관한 동떨어진 조치가 아니라, 소비자 보호를 국제적인 기후 약속과 조화시키려는 점증하는 추세임을 보여준다.

멕시코에는 탄소발자국 측정을 위한 기술규정과 자발적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소비자 제품의 탄소 배출량 표시를 명확하고 통일된 방식으로 규정하는 법률 조항은 없다. 이러한 법률의 부재는 비교 가능한 환경 정보를 제공 받을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며, 책임 있는 소비 결정을 어렵게 한다.

또한 구체적인 법률 체계의 부재는 모호하거나 불정확한 환경 관련 주장을 조장하여 소비자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검증 가능한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들에게 경쟁력 저하를 초래한다.

본 발의안은 다음 목적을 위해 생태 균형 및 환경 보호에 관한 일반법 제4장 제6절에 제37조의3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1. 탄소발자국을 환경 정보 제도로 인정한다.
2. 탄소발자국 측정 및 점진적 확산을 촉진한다.
3. 지속 가능한 생산 및 소비 관행을 장려한다.
4. 멕시코에서 기후 투명성을 강화한다.

또한 법 체계의 체계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 제37조의3을 제37조의4로 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생산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고 자유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발적 제도로 시작하여 우선순위 부문에서 의무적인 제도로 전환하는 점진적인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된 변경사항을 보여주는 비교표는 아래와 같다.

| 생태 균형 및 환경 보호에 관한 일반법 | |
|-----------------------|---|
| 현행 조문 | 제안된 조문 |
| 해당 조항 없음. | <p>제37조의3. 경제부가 환경천연자원부 및 연방소비자보호청과 협력하여 지정하는 소비자 제품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방법론에 따라 계산된 탄소발자국에 관한 명확하고 객관적이며 검증 가능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p> <p>탄소 배출량 표시의 시행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며, 자발적 제도로 시작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시행 규정에서 정한 부문에서는 의무적인 제도로 전환된다.</p> <p>제공되는 환경 정보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오해나 혼란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p> |

이상을 토대로 멕시코 합중국 헌법 제72조 첫 번째 단락, 멕시코 합중국 연방의회 조직법 제3조, 하원 규정 제77조 및 제78조에 근거하여 하원 본회의 심의를 위해 다음 법안을 제출한다.

연방 소비자보호법에 제37조의3을 추가하는 법령

단일 조항. 다음과 같이 생태 균형 및 환경 보호에 관한 일반법에 제37조의3을 추가하고 현행 제37조의3을 제37조의4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의3. 경제부가 환경천연자원부 및 연방소비자보호청과 협력하여 지정하는 소비자 제품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방법론에 따라 계산된 탄소발자국에 관한 명확하고 객관적이며 검증 가능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탄소 배출량 표시의 시행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며, 자발적 제도로 시작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시행 규정에서 정한 부문에서는 의무적인 제도로 전환된다.

제공되는 환경 정보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오해나 혼란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

제37조의4. 환경에 관한 멕시코 공식표준은 국가 영토에서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그 적용 범위, 효력 및 점진적 시행을 규정한다.

경과규정

제1조. 본 법령은 연방관보에 고시된 다음 날부터 발효된다.

제2조. 연방 정부는 역일 기준으로 180일 내에 탄소 배출량 표시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제3조. 경제부는 환경천연자원부와 협력하여 탄소 배출량 표시를 의무적으로 적용할 우선순위 부문 및 제품을 정한다.

참고문헌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제품 환경발자국(PEF)*.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친환경 주장 이니셔티브*.
- 프랑스 정부, *Loi Climat et Résilience*.
- 경제협력개발기구(OCDE), *소비자 정책과 환경*.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
- 칠레 환경부, *생산자책임확대제도법 및 칠레 탄소발자국 프로그램*.
- 코스타리카 정부, *탄소중립 국가 프로그램*.
- 콜롬비아 환경지속가능발전부, *국가 탄소중립 프로그램*.
- 브라질 환경부, *브라질 GHG 프로토콜 프로그램*.
- 아르헨티나 환경전문가협회, *아르헨티나 환경 지속가능성 인증 마크 및 국가 환경 표시*.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2026년 2월 18일, 산 라사로 하원 의사당에서 발의함.

하원의원 디아나 에스테파니아 구티에레스 발티에라 (서명)